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6. 9 선고 2022가합10051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

담당변호사 오아람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

담당변호사 이정곤

변 론 종 결 2023. 5. 26.

판 결 선 고 2023. 6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2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음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각종 농업용 및 수산업용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. 나. 피고는 C의 남편으로, D(C의 언니)와 이혼한 E과 전 동서지간이다.

다. 원고는 2014. 8. 5.경 E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농업기계기구부품을 E에게 판매하고, E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(이하 ‘이 사건 대리점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을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보증계약’이라 한다).

라.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(이하 ‘이 사건 계약서’라 한다)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데, 피고는 부동산자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 아래 부분에 수기로 “B 2억 5천만원”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다(위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‘이 사건 수기 부분’이라 한다).

■ 대리점 계약서

제12조(연대보증인의 책임과 그 범위)

1. E과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E의 모든 채무(모든 채무란 물품대금, 지원자금, E이 부담할 제 비용, 원고의 손해, 지연이자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의미함)를 부담할 보증인을 입보(立保) 시키기로 하고, 본 계약에 따라 계속적인 거래가 끝날 때까지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포괄근보증을 하기로 합니다.

3. E의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한도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E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제20조(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)

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또는 E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

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 5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

마.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21. 9. 30. 기준으로 합계 950,119,454원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F의 각 감정서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E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950,119,45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도액인 25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1)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보증 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보증계약은 「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‘보증인보호법’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무효다.

2) 이 사건 보증계약은 포괄근보증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근보증 한도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, 보증기간도 10년의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바, 이러한 사항들은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데,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. 따라서 원고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약관법’이라 한다)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증 내용에 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2조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3)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부당하게 장기이므로,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2조 제3항은 약관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무효이다.

4)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E의 주채무 계약기간은 5년이고,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반해,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, 보증인인 피고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거나 형태보다 중하므로, 피고의 보증기간은 민법 제430조에

따라 5년으로 감축되어야 한다.

3. 관련 법령

■ 보증인보호법

제6조(근보증)

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.

■ 약관법

제3조(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)

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9조(계약의 해제 · 해지)

계약의 해제 ·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.

6.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

■ 민법

제430조(목적, 형태상의 부종성)

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.

4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950,119,454원에 이르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25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보증인보호법 위반 여부

살피건대, 감정인 F는 이 사건 수기 부분의 필적이 추후 가필이나 첨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, 피고와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, 감정인의 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 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바, 피고는 이 사건 수기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.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포괄근보증으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으므로,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약관법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

가) 관련 법리

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내용’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(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),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까지 명시설명义务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(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67612 판결 등 참조),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,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(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201610 판결 등 참조).

나) 이 사건의 경우

E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,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, ① E은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 전인 2012년경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그 계약에 대하여도 포괄근보증의 형태로 연대보증을 한 점, ② E은 D와 이혼한 후 종전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D, C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는 보증기간이 “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E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”라 기재되어 있고, 보증한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, 피고는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이 사건 수기 부분을 작성한 점, ④ 피고는 E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농기계 등의 대리점을 운영하고, 대리점 운영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E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채무(지원자금, 기타 E이 부담할 제 비용, 손해금)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E의 종전 대리점 계약이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 이 사건 보증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 원고가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약관법 제9조 제6호 위반 여부

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E의 계약기간은 5년이 원칙인데 반해, 피고의 보증기간은 10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, ① E의 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나 E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5년씩 연장되는 점(실제로 원고와 E은 2014. 8. 5.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 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한

것으로 보인다), ② 그에 비해 피고의 보증기간은 10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점, ③ 달리 10년의 보증기간이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10년의 보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민법 제430조 위반 여부

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, 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억 5,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E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할 뿐 달리 주채무자인 E보다 무거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증기간은 10년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, E의 계약기간은 5년씩 연장이 가능한데, E은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 계약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E의 계약기간이 5년의 경과로 종료되더라도, 피고는 E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E과 연대하여 부담할 뿐 새로운 채무를 추가하여 부담하지 않는 점(E의 계약종료 시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 피고가 보증기간인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, 이는 주채무자인 E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채무이다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보증계약이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. 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선희, 판사 이희수, 판사 김수민